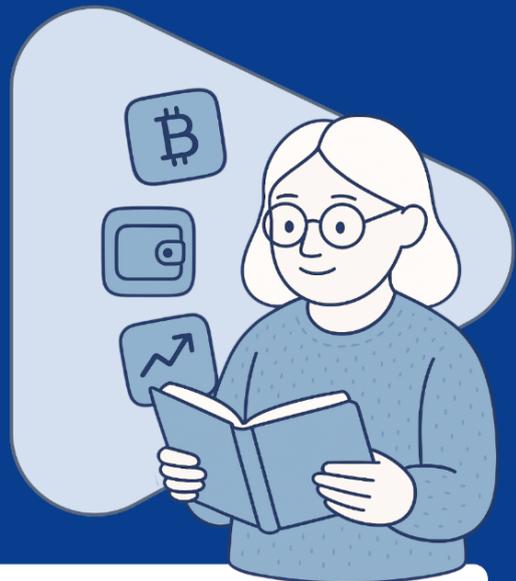


# “ 시니어를 위한 금융꿀팁 BEST 30 ”

- 1 슬기로운 금융생활
- 2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3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4 누구나 당할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5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6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두나무  금융감독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들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두나무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진행합니다.

# CONTENTS

---

## ■ 슬기로운 금융생활

- 01. 시니어에게 유익한 금융 꿀팁! 4
- 02.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6
- 03. 잘못 송금한 돈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8
- 04. 내 돈!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10
- 05. 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12

## ■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06. 원금 손해없이 안전하게 자산관리하기! (저축상품) 14
- 07.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투자상품) 16
- 08.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자가 3배나 더? (신용과 대출) 18
- 09. 보험계약 중도해지? 다른 방안부터 알아보세요. 20
- 10.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2

## ■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11. 빈곤한 노후, 국가가 책임집니다! (기초연금) 24
- 12. 국민연금 AtoZ 26
- 13.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으로 준비하는 안정적인 노후 28
- 14. 노후준비의 히든카드! (주택연금) 31
- 15. 든든하고 안전한 연금생활을 위한 연금 관련 사이트 32

---

## ■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16. 알면서도 당하는 금융사기의 유형들	34
17. 점점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들	36
18. 금융사기 대처하기와 예방하기	48
19.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활용하기	40
20.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다니" 이제 은행이 배상해 준다!	42

## ■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21. 디지털자산, 어렵지 않아요!	44
22.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의 든든한 기반	46
23.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선택이 투자 성패를 가른다!	48
24. 디지털자산, 세금과 규제 핵심만 꼭 집어보기	50
25.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투자사기, 실제 피해 사례로 배우기!	52

## ■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2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예요?	54
27. 손해없이 가입 철회 요구 – 청약철회권	56
28. 당당한 계약해지 요구 – 위법계약해지권	57
29.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58
30.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하는 법	60

# 01

슬기로운 금융생활

## 시니어에게 유익한 금융 꿀팁!

1.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6% ~ 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이라는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약 적용 대상 : i) 만 65세 이상 운전자 ii) 기명피보험자가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②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를 3.6%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의무 교육 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 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의 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가입자, 배우자 및 자녀이며, 치매보험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 받은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우선 가입하세요.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5천만원(원금기준)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합계액 기준 5천만원이며,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므로 이후에는 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4. 시니어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숙려기간 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성상품\*\*에 가입할 경우, 투자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2영업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i)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ii)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 5.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 6.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두세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청구 서비스는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02

슬기로운 금융생활

#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 1.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용 통장은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고금리 파킹통장을 연결하여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2.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판 예·적금 상품은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하여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 시까지만 적용되고,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들이 문자, PUSH 알림 등을 통해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만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 4.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 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신협, 산림조합,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활용을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됨

## 5.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 보세요.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입 시 약정 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적금을 상당 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과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출금(부분 인출) 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도 있으므로,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 03

슬기로운 금융생활

## 잘못 송금한 돈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계좌번호를 틀리게 하여 돈을 잘못 보내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잘못 보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은행에 연락하면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늘어나자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안내서를 발송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시행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 2. 신청 대상

착오송금을 했다고 해서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간편송금으로 보낸 경우나, 간편송금에서 간편송금으로 보낸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송금하거나 간편송금에서 금융회사로 송금한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나, 다음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②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했지만 반환 받지 못한 경우
- ④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의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 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 ⑥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 3. 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공동인증서 및 이체확인증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어, 반환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됩니다.

### 4.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외국은행 국내 지점 포함),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하며 보험회사는 제외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04

슬기로운 금융생활

## 내 돈!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1.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2. 보호대상 금융기관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우체국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3.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예금자보호 한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동일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해외 주요국과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정부 발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05

슬기로운 금융생활

## 빛이 많아 힘드세요? 해결을 도와 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 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법원이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 2. 공적 채무조정제도(법원)

#### ①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급여나 영업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 전액을 3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중지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 단, 법률상 일정한 제한이나 면책 불허 사유가 존재합니다.

### 3. 사적 개인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신용 등급 하락을 막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연체 위험을 줄이고 채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신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②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적 구제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본 조정을 통해 채무자는 월 변제액 감소 및 총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 ③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 이상 연체 중인 사람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사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이 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채무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재구조화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4. 나에게 맞는 개인채무조정 찾기 (<https://cyber.ccrs.or.kr/index.do>)

현재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6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원금 손해없이 안전하게 자산관리하기 (개인채무조정제도)

### 1. 노후자금 관리의 중요성

노후자금은 남아있는 삶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칫 무리한 투자로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익은 없는데 물가만 오른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막상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금융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저축과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저축상품 VS 금융투자상품

#### ① 저축상품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예금자보호제도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금융투자상품

저축상품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3. 저축상품 똑똑하게 선택하기

① 저축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축의 목적과 저축기관, 납입금액 등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전 업권을 포괄한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시스템입니다.

저축하고자 하는 기간, 금융권역, 지역 등 세부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하고 검색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세후 이자율, 최고우대금리, 가입대상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보다 쉽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찾아보세요.

## ② 자금계획에 맞는 만기를 설정하세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저축상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저축상품 가입 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상품의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된 예금은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③ “비과세종합저축”부터 우선 가입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가입 가능) 은행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예금, 보험회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증권회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여러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④ 특판예금 및 온라인 전용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연금수령자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과 같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높은 특판예금과 온라인 전용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 보기를 바랍니다.

## 4. 예금자보호제도 이용하기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와 각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2025년 하반기 1억원 상향 가능성)까지이며 하나의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쳐서 적용하므로 예금에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07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개인채무조정제도)

### 1. 주식투자 시에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해 보세요.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매입한 주식의 배당소득세, ETF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 2. 주식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주식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입금을 독촉하는 경우, 사기이거나 미등록 사설업자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 한다거나, 허위정보 제공,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3. 펀드에 투자한 돈을 찾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펀드에 투자한 돈을 찾으려 환매 신청을 하면,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매 신청 후 운용사가 투자한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돈을 찾으려면 환매 소요 기간을 미리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4. 펀드 투자 시, 수수료·보수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회사, 운용회사 등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각 기관에 대해 수수료 보수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라 하더라도 수수료 금액, 내는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액수 등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며, 내는 방식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인터넷 전용펀드 등은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펀드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찾으려고 하면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기간 내 필요한 자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5. ETF(Exchange Traded Fund), 주식이나 펀드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뜻인데,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인덱스펀드는 시장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된 펀드를 말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펀드의 특징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언제든지 매매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즉,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경우 주식처럼 상장폐지도 가능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매매수수료도 주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해 주는 대가로 받는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상품 운용사에 따라 다르며,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08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자가 3배나 더? (신용과 대출)

### 1. 신용점수와 이자비용

금융에 있어 신용이란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수로 나타낸 것을 신용점수라고 합니다. 신용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1,000점까지로 평가되며,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의 비용인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별 일반신용대출 금리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301~400점인 경우 3배 넘게 금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2. 신용점수! 이렇게 관리하세요.

신용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것처럼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좋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하고 현명한 신용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 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을 자제합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부업 대출 등을 이용할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합니다.

카드 이용대금이나 통신요금, 세금 등의 소액도 연체 횟수가 증가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 부주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서비스를 활용하고 미리 통장 잔액도 확인합니다.

#### ③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 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이력이 최장 5년까지 남아서 신용점수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거래합니다.

금융회사도 거래 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 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은행거래 실적이 있어야 신용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의 30~5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크카드도 매달 30만원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⑥ 세금, 국민연금, 통신요금 등 납부실적 제출하기

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납부실적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여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⑦ 마이데이터로 신용점수 올리기

최근 마이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개인의 자산, 공공정보를 손쉽게 제출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 3. 내 신용점수 알아보기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는 회사를 신용평가회사라고 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가 대표적입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점수를 비롯한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점수 산출 근거를 문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NICE평가정보(NICE지키미) (<https://www.credit.co.kr>)

\*KCB(올크레딧) (<https://www.allcredit.co.kr>)

\*SCI평가정보(SIREN24) (<https://www.siren24.com>)

## 4.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합니다.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연소득, 직위, 신용점수 등에 변동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향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09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보험계약 중도해지? 다른 방안부터 알아보세요

### 1. 보험계약 중도 해지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해지 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긴급자금이 필요해요.

#### ① 보험계약대출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 처리되면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② 중도인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요.

#### ① 자동대출납입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② 납입유예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③ 감액완납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이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 및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효된 달에는 3개월치 보험료 납입 시 별도 절차 없이 부활 가능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심사가 감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1. 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다르므로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 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채권은 일반채권(선순위채권) - 후순위채권 - 신종 자본증권의 순위로 변제됩니다.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 또는 신종 자본증권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고,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 해야 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과 만기가 없고(영구채) 후순위 특약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으로 구분

### 2.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가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 3. ISA, IRP 등을 통해 채권 투자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개형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에도 과세

\*\*이자소득 200만원 까지(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 4. 채권의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원리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 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신용보강 내용 등 위험요소가 다양하므로 투자설명서 또는 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채권 정보

예탁결제원 SEIBRO(<https://seibro.or.kr>) - (메뉴)채권 - 종목상세내역

##### ②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DART) (<https://dart.fss.or.kr>) - (메뉴)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

##### ③ 신용평가서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 (메뉴)업무자료 - 금융투자 - 신용평가공시

#### 5. 파생결합사채(ELB)투자 시, 발행사(증권사)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발행사(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 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상환 가능성과 무관합니다. 파생결합사채(ELB)의 원리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11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빈곤한 노후, 국가가 책임집니다! (기초연금)

### 1.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648,000원 이하의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2025년 기준)

### 3. 기초연금액

#### ① 기초연금액 최고 한도

기초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고시하며, 소득 하위 일정 비율(약 3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고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 기초연금액(최대 지급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342,51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48,000원 지급 (2025년 기준)

## ②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연금액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 유인을 장려하고자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 금액(112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 공제율(30%)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4. 기초연금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②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에서는 “복지로”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2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국민연금 AtoZ

###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추어 연금액도 많아지며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입니다.

#### ①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수급이 개시되고 이후 평생 지급받는 연금

#### ②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받는 연금

#### ③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받는 연금

### 2.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3. 국민연금 청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4.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수령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① 추후납부제도(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납기간은 최대 10년이고 보험료는 60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60세가 되었으나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 주로 가입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③ 연기연금제도(연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50~100%를 낮춰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므로 5년간 최대 36%의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④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반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가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가입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되면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로 연금 수령액이 커집니다.

#### 5. 국민연금 수급과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으로 연간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연간소득 산정 시 100% 전액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즉,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13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안정적인 노후

### 1. 퇴직연금과 세금

#### ① 퇴직소득세

퇴직금(퇴직급여)을 IRP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며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인출 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20년까지는 45% 감면, 20년 초과 시 50% 감면으로 절세효과 나타납니다

#### ② 이자소득세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평가차익 등 운용수익은 계좌 내에서 발생 시 즉시 과세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운용수익 전액을 세금 유출 없이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운용수익을 포함한 총 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연금소득세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세나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③ 개인형 IRP의 세금

IRP 계좌를 포함한 연금계좌(연금저축 포함) 납입액에 대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여 연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 연금의 연간 총수령액을 1,500만원으로 관리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되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총 1,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연금의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 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 ~ 69세	5.5%	4.4%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3.3%

###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아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내역 등을 확인해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 14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노후준비의 히든카드! (주택연금)

### 1.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주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능하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갚으면서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 한도는 연금지급 한도의 90% 까지이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3.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갑작스런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가 결혼 한다거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4. 이사를 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게 되면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점에 기존주택과 이사 가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초기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병원이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집을 비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5.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 주택연금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100세 시대, 나를 지켜주는 연금

## 튼튼하고 안전한 연금생활을 위한 연금 관련 사이트

### 1. 연금 관련 세금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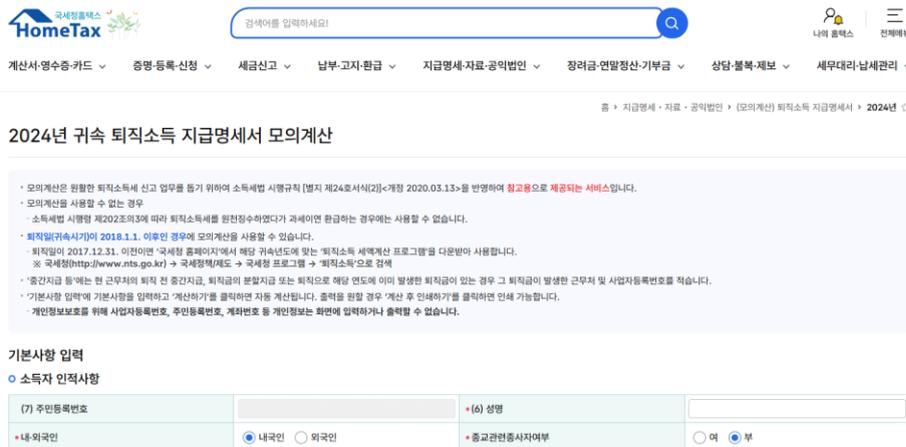
(<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연금세제안내)



### 2. 퇴직소득 세액 확인

국세청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모의계산)



### 3.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연금액 조회, 가입 및 납부 내역 조회, 찾아가지 않은 연금 확인, 연금 급여 청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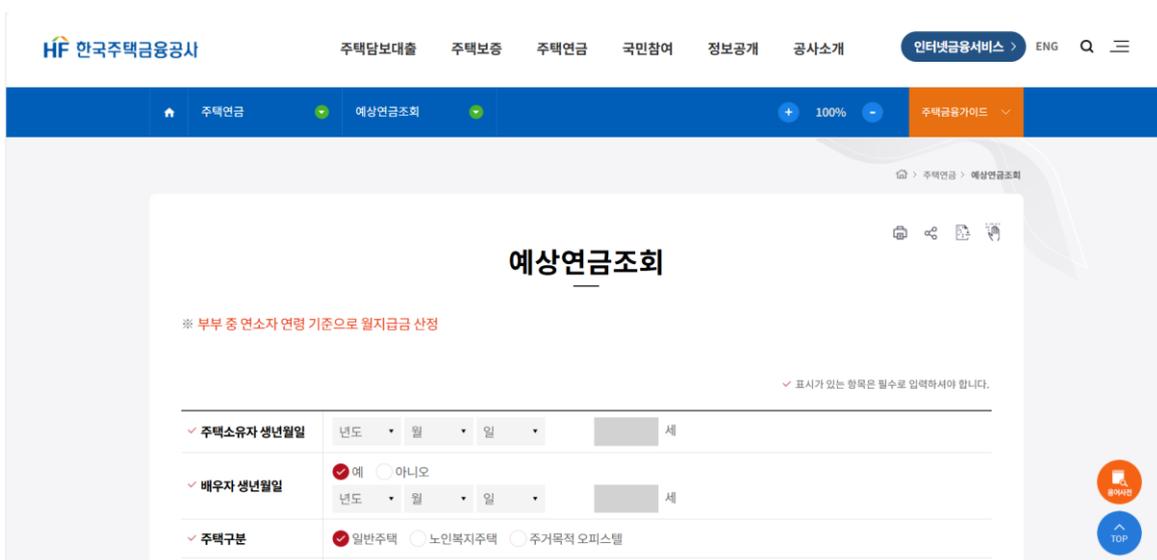
(<https://csa.nps.or.kr> - 내 연금 알아보기)



### 4. 주택연금 예상액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 16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알면서도 당하는 금융사기 유형들!

### 1. 보이스피싱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빼내는 대표적인 금융사기입니다.

#### ① 공공기관 사칭형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건, 대포통장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압박하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대출 빙자형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상담 등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대출 진행을 위해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에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 ③ 납치 빙자 및 사고 빙자형

자녀 등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속이거나, 자녀 등 가족이 친구의 보증을 서서 잡아 왔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거나, 사고를 당했다며 급한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④ 정부 지원 사업 빙자형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예: 소상공인특별 지원금 등)을 빙자하여 거짓 안내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 2. 파밍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가짜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알아내 사기범들이 돈을 빼내어 갑니다.

### 3.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입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감염시켜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입니다. 청첩장, 택배안내, 해외신용카드결제 등 별생각 없이 읽어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가장하여 발송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으로 발송하여 링크를 터치하도록 유도합니다.

### 4.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 하며 급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가족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거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접근해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거절하기 힘든 긴급한 사유를(예: 교통사고 합의금, 휴대폰수리비 등) 대며 소액을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돈을 가로칩니다.

### 5. 큐싱

QR코드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입니다. 악성 QR코드를 촬영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휴대폰 원격 통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입니다.

# 17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점점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들

### 1. 고도화,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디지털금융의 확대에 따라 금융사기 수법도 점점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무작위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으로 발신 번호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파악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상황 연출까지 하는 등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범죄 연루, 해외신용카드사용, 택배수령 등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의 메시지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URL 링크를 보내 휴대폰에 원격조정앱 등을 설치하는 디지털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사기는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직접 모바일뱅킹의 오픈뱅킹을 악용하여 모든 은행 계좌의 잔고를 인출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받아 인출하는 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구분	과거	현재
전화번호	국제전화번호 및 070 등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의 실제 전화번호 표시
개인정보	무작위로 전화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전화
상황연출	단순한 상황 연출	단계적이고 사실적이며 치밀한 상황 연출
인출방법	ATM으로 유도하여 가로채기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모바일뱅킹 정보를 빼내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의 예금은 물론 대출 등을 통해 사기범이 직접 이체
피해대상	금융거래에 취약한 노년층 등	누구나 피해대상이 될 수 있음

## 2. 발신번호 변작

발신번호를 위조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발신번호 변작(거짓 표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심번호 차단 앱이 휴대폰 이용자 사이에서 보편화되면서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번호로 위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을 사칭해 협박하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어 한층 더 경계해야 합니다.

알고 있던 은행 대표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18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금융사기 대처와 예방하기

### 1. 금융사기 대처하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① 금융회사(또는 경찰)에 지급정지 신청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송금한 은행 또는 경찰(☎11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회 100만원 이상 이체된 금액은 ATM에서 출금 시 3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므로 이체 후 30분 이내에 재빠르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피해구제 신청 (정식 서면 접수)

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합니다.

#### ③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피해금 환급

지급정지된 계좌(사기 피해 이용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④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2023년 11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2. 금융사기 예방하기

#### 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전화로 공공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보고, ATM으로 유도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알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서 대출권유 등을 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스콜 같은 스팸 번호 탐지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한 것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스미싱 피해 예방법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 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앱은 공인된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만 다운 받도록 합니다.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해당 앱을 삭제하고 전원을 끈 후에 가까운 통신사나 휴대폰 AS센터로 방문하여 점검 및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V3 Mobile과 같은 백신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③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법

가족, 친구, 지인 등이 돈이 필요하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온 경우에는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하고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2.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4.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5. 납치·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7.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9.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19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활용하기

### 1. 지연이체 서비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지시하는 때부터 별도 지정한 이체 지연 시간 이 경과한 후(최소 3시간) 이체 처리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예정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창구나 ATM 이체는 지연 이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단말기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스마트폰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4. 해외 IP 차단 서비스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노출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6.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를 연중무휴(매일 00:30~23:30)로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물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http://payinfo.or.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 대응법

##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다니” 이제 은행에서 배상해 준다!

### 1. 보이스피싱 책임분담제도란?

2024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 과실과 은행 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고려해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 2. 배상신청 방법

배상 신청은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엔 은행이 피해사실과 피해환급금액을 확인하는 등 사고조사를 하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와 수사기관의 결정문,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신청대상 및 배상범위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배상범위는 금융사고 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가령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됩니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과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고객의 중과실이 큰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하고 고객이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 즉시 은행에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해 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상 절차가 지연되고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고 만약 가족과 지인간 공모 등 고객의 사기행위가 발각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책임분담제도 한계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금융사고에 법원도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은행이 직접 배상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의 불만이 커져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21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어렵지 않아요!

### 1. 디지털자산, 어렵지 않아요!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전자적(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은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서만 거래되고 저장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자산은 기존의 화폐나 예금과 달리, 중앙은행이나 정부 등 특정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대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되고, 누구나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디지털자산은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 디지털자산의 주요 유형

디지털자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로 송금, 결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 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②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 ③ 대체불가토큰(NFT)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그림, 음악, 동영상,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품, 수집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④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비슷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에 대한 권리(예: 배당금, 의결권 등)를 부여하는 디지털자산입니다.

## 3. 새로운 자산의 형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자산의 형태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유틸리티 토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22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의 든든한 기반

### 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원리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노드)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블록’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 시간 순서대로 연결(체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블록에는 거래 내역과 이전 블록과의 연결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수의 컴퓨터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에 따라 블록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내역을 공유하게 되어, 데이터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디지털자산의 등장과 블록체인의 역할

디지털자산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자산의 형태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디지털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이 안전하게 생성·보관·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만 존재하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디지털자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 3. 블록체인이 디지털자산에 제공하는 주요 기능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자산의 여러 중요한 특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① 불변성(Immutable) :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의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② 투명성(Transparency) : 누구나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이 매우 매우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③ 분산성(Decentralization) : 중앙 기관이 아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검증합니다.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오류나 해킹에 대한 위험이 줄어듭니다.
- ④ 보안성(Security) : 암호화 기술과 분산 저장 방식 덕분에 해킹이나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 4. 블록체인이 디지털자산에 제공하는 주요 기능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탄생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①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로, 중앙 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 ② 스테이블코인 : 실물 자산(달러, 금 등)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자산으로, 역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됩니다.
- ③ NFT(대체불가토큰) : 디지털 예술품, 음악, 동영상 등 고유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소유 및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 ④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 투자 권리나 서비스 이용권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 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미래 전망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자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암호화폐와 NFT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의료, 공공 기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결합은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곧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와 가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23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선택이 투자 성패를 가른다!

### 1.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개념과 기능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거래소는 사용자가 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 서로 다른 디지털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며, 자산의 보관, 실시간 시세 제공, 다양한 주문 방식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거래소의 주요 유형

#### ① 중앙화 거래소(CEX)

기업이나 운영 주체가 거래 및 자산 보관을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 ② 탈중앙화 거래소(DEX)

중앙 운영자 없이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개인 간(P2P) 직접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직접 거래를 실행하며,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특징과 발전

은행이나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가 가능해 입출금이 빠르고, 국경 간 송금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실시간 시세 확인, 가격 알림, 다양한 차트 제공 등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2017년 두나무가 설립한 국내 최대규모 거래량의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원화·비트코인·테더 마켓에서 180여 종의 코인과 290개 이상의 거래쌍을 지원합니다.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시세 확인, 간편 주문, 투자 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랩을 통해 다양한 지수와 분석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인증과 24시간 모니터링, 다중 인증 등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있고 이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자율규제 기구와 협력하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규제 환경과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준수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정보보호 인증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4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세금과 규제 핵심만 꼭 집어보기!

### 1. 디지털자산 과세의 유예와 향후 시행 계획

디지털자산(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간 유예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예 결정은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행 상황, 과세 체계의 미비, 국제 정보 교환 체계(CARF MCAA) 도입 준비, 업계의 과세 기준 명확화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2. 2027년 시행 예정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시행될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과세 대상**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의 매매, 양도, 대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한도로까지는 기본 공제 후,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③ **세율** :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의 소득세(지방세 포함 시 22%)가 부과됩니다.
- ④ **과세 방식**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취득가액 산정**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⑥ **해외거래소 이용자 과세** : 2027년부터는 국제암호자산 정보자동교환 체계(CARF MCAA)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국제 암호자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CARF MCAA)가 도입되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3.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

최근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거래 기록 유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실명계좌, 고객확인(KYC),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 진입 확대** : 2025년 말까지 적격 기업 및 기관의 디지털자산 거래 참여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④ **감독 및 자료 제출 강화** : 국세청 및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의한 거래내역 자료 제출 의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 4. 국내 규제 동향 및 주요 쟁점

- ① **과세 형평성** : 현재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나, 2027년부터는 국제 정보 교환 체계 도입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② **규제 명확성 강화**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제안을 도입하거나 논의 중이며, 국내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③ **시장 및 투자자 보호** :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기관투자자 유입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5. 향후 전망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과세 체계의 정비,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향후 국내외 규제 환경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은 제도 변화와 관련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25

디지털 전환시대, 떠오르는 디지털자산

##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투자사기, 실제 피해 사례로 배우기!

디지털자산 투자사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수익, 특별 정보, 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범죄로 최근 SNS, 유튜브, 채팅앱,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 미신고 거래소, 가짜 코인, 출금 거부, 추가 입금 요구 등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접근방식

주로 SNS, 채팅앱,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 교육이나 수익 인증을 내세우며 접근하거나 지인 소개나 유명인, 공무원, 거래소 직원 등을 사칭해 신뢰를 얻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인 소개를 통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회유방식

비현실적인 고수익이나 손실보전, 수익보장, 지급보증서, 계약서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킵니다. 허위 수익 인증 사진, 명품 소비 인증, 성공담을 보여주며 부러움과 신뢰를 유도하고, 미공개 정보나 신규 상장 코인 등 내부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의 경우 장기간 대화를 통해 친밀감과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투자 권유로 이어집니다.

### 3. 사기수단

① 미신고 디지털자산거래소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 링크를 전송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② 가짜 코인 및 위조 문서 :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판매하거나, 거래소 상장 공지, 계약서, 지급보증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신뢰를 얻습니다.

③ 개인지갑 전송 요구 :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 설치 및 주소 제공을 유도하고, 그곳으로 디지털자산을 송금하게 합니다. 리딩방·대리매매 : 유료 리딩방, 대리매매를 통한 투자 권유, 계정 정보 요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④ NFT 경매 사이트 : NFT 경매를 빙자해 투자금을 유입시키고, 프리미엄 멤버 가입이나 대출 명목으로 지갑 접근 권한을 탈취합니다.

## 4. 사기방법

사기범들은 초기에 소액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은 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출금 시 추가 입금을 요구한 후 연락을 끊고 가짜 거래소 차트 조작, 정상 거래소와 유사한 사이트 제작 등으로 투자자를 혼동시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5. 주요 피해 사례

- ①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 유튜브, SNS 등에서 투자고수, 종목추천 광고로 접근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초기 소액 출금 성공으로 신뢰를 얻은 뒤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 매수·매도 지시, 출금 시 추가 입금 요구 후 입금 시 잠적합니다.
- ② 락업 코인 판매 사기 : 유튜브, 카톡방 등에서 신규 상장 예정 코인 투자 권유, 락업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고수익 약속, 추가 매수 유도, 상장 미이행 및 락업 해제 후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③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트 앱 등에서 이성으로 접근, 장기간 대화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권유, 대출까지 받아 투자 유도,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후 입금 시 잠적합니다.
- ④ 유명 코인 사칭 및 가짜 코인 판매 : 시가총액 상위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 실제로는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 지급보증서 등 위조 문서 제공, 락업 해제일 미이행하고 잠적합니다.
- ⑤ 거래소 임직원·공무원 사칭 : 거래소 임직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사칭해 접근, 신규 상장 예정 코인 정보 제공, 위조 공지사항·문서 제시, 투자 유도 후 연락 두절합니다.
- ⑥ 리딩방·대리매매 사기 : 유튜브, 오픈채팅 등에서 리딩방, 대리매매 홍보, 유료 회원 가입, 계정정보 제공 유도, 손실 발생, 환불 거부, 출금 거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 ⑦ NFT 경매 사기 : 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NFT 경매 투자 권유, 소액 투자로 수익 발생을 보여주고, 대출 등 명목으로 추가 투자 유도, NFT 경매 사이트에서 지갑 접근 권한 탈취, 투자금 전액 인출하여 잠적합니다.

## 5. 예방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며, 낯선 이의 투자 권유나 고수익 보장은 반드시 의심하고. 미신고 거래소 이용, 추가 입금 요구, 위조 문서 제시, 유명한 사칭 등은 대표적 수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나 DAXA를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공식 기관을 통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26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예요?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입니다.

2011년 도입이 추진된 지 9년 만인 2020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거래에 비해 수요자(금융소비자)와 공급자(금융회사)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회사 간 겸업화의 영향 등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소법이 수요자(금융소비자)와 공급자(금융회사) 사이의 격차를 완화해 주는 법적 제어장치로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 금지제도, 자료열람요구권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2023년 10월 12일)으로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되었는데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 해 줍니다.

③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넛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하여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④ 그 외에도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은 야간(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7

##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 손해없이 가입철회 요구하기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만 행사 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금융 상품 판매 회사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금융 관련 기관 등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금융상품마다 다른데

- ①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숙려기간 2일 포함 시 9일)
- ②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 ③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효력은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 발생하며,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은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약 철회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재화 등을 반환

#### ① 보장성 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②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③ 대출성 상품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등)를 반환

# 28

##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 당당하게 계약해지 요구하기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법에서 정한 6가지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① **적합성 원칙** : 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 금지
- ②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알리고 확인
- ③ **설명 의무** :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 ⑥ **광고 규제** :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

이 중에서 ⑥ 광고 규제를 제외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은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29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금손실 수용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은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은 판매 원칙 준수를 위하여 거래 목적 및 재산 상황 등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종전 보다 거래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0

금융소비자보호법 100% 활용하기

##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하는 법

### 1. 금융민원 상담서비스 이용하기(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 상담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 상담(ARS 1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 서비스(ARS 0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이용하기

금융 관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https://www.fcsc.kr>)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 할 수 있으며 우편, FAX,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 2일부터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의 처리방식은 분쟁접수 - 자율조정 - 실무검토 - 합의권고 -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심의의 과정이었으나, 금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되어, 금융분쟁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합니다.



## 시니어를 위한 금융꿀팁! BEST30

발 행 일 | 2025년 5월 22일

인 쇄 | 2025년 5월 28일

발 행 인 | 윤덕홍

편 집 |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감 수 | 금융감독원

발 행 처 |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601호(여의도동, 금산빌딩)  
02-3775-1402

본 교재는 시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두나무와 금융감독원에서 후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할 경우 금융감독원 및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